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직원 채용 공고

성남시 출연기관인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과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 구현을 위해 전문성과 참신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위원장

□ 모집분야 및 인원

직종	직위(직급)	채용인원	모집분야	
계		6명		
일반직	팀원 (6급)	1명	일반	행정(법무)
		2명		청소년정책(기획·개발·연구)
		1명		시설(기계)
		2명	전문	청소년활동

□ 응시자격

구분	자 격 기 준	
공통사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한 청년고용으로 공고일 현재 (만15세이상 만34세이하)으로서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이거나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일반직	행정(법무)	○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 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한 기관의 관련분야 경력자 ○ 법무 관련학과 졸업자 ○ 법무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정책(기획·개발·연구)	○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 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한 기관의 관련분야 경력자 ○ 청소년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관련기관(시설)에서 청소년정책관련 업무 경력자
	시설(기계)	○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 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한 기관의 관련분야 경력자 ○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계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기계 관련분야 경력자
	전문분야	○ 청소년 관련학과 졸업자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 청소년정책(기획·개발·연구), 청소년활동

- 청소년관련학 :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 관련기관(시설)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가.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나. 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다. 겸직제한 :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음

□ 근무조건

가. 직 종 : 일반직 6급(팀원)

나. 정 년 : 만60세

다. 근무형태

1) 주5일, 40시간

2) 업무특성상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를 할 수도 있으며, 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병행할 수 있음
 라. 보 수 : 연봉제(재단 제규정에 따름)

□ 심사절차 및 합격자 결정

시험방법		단계별 합격자 결정기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후 필기시험 대상자 선발
2차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 분야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응시자 중에서 시험 과목의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발, 합격자 중 최저득점자와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응시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 미만일 경우 전원 면접심사 실시
	필기시험 • 직업기초 • 직무수행	
3차	면접심사 직무능력중심 경험·상황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면접심사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최종합격자 결정		• 2차·3차 시험의 각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결정

※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 중 포기자 및 해당직무 결원이 발생할 경우 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 분야별 5순위까지 예비합격자로 선발 예정

□ 전형일정

구분	주요내용
원서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기간 : 2018. 10. 24.(수) ~ 10. 30.(화) ※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중원청소년수련관 4층)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인 가능) ※ 근무시간 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1차 서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자 발표 : 2018. 11. 1.(목) 예정 -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2차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 : 2018. 11. 3.(토) 예정 -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별도 공지 • 합격자 발표 : 2018. 11. 7.(수) 예정 -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3차 면접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심사 : 2018. 11. 13.(화) 예정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재단 일정상 부득이하게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임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직무능력 중심(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증빙서류는 원서 접수시,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응시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3. 모든 제출서류에는 기관명, 학력사항이 명시되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
4.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급(위), 담당업무 등 확인·증명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담당업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주 40시간 근무 경력이 아닐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
5.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구비서류	유의사항	비고
신분증 지참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 응시자격(청년) 확인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워드 작성가능
자기 소개서 1부	○ 지원분야와 관련된 보유 역량 등 A4용지 3매 이내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경력·경험 기술서 1부	○ 지원분야와 관련된 경력 및 직무경험 등 A4용지 3매 이내 ※ 특정기관명, 학교명 등 기재 금지	
경력 및 재직 증명서 각 1부	○ 원본	해당자에 한함
자격확인서	○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고용보험)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u>자격득실확인서</u> (경력기간과 동일한 기간만 인정)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 직무관련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 응시원서 기재사항 전부, 이수시간 명시 필수	
자격기준 해당자격증 사본	○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응시자 전원	

□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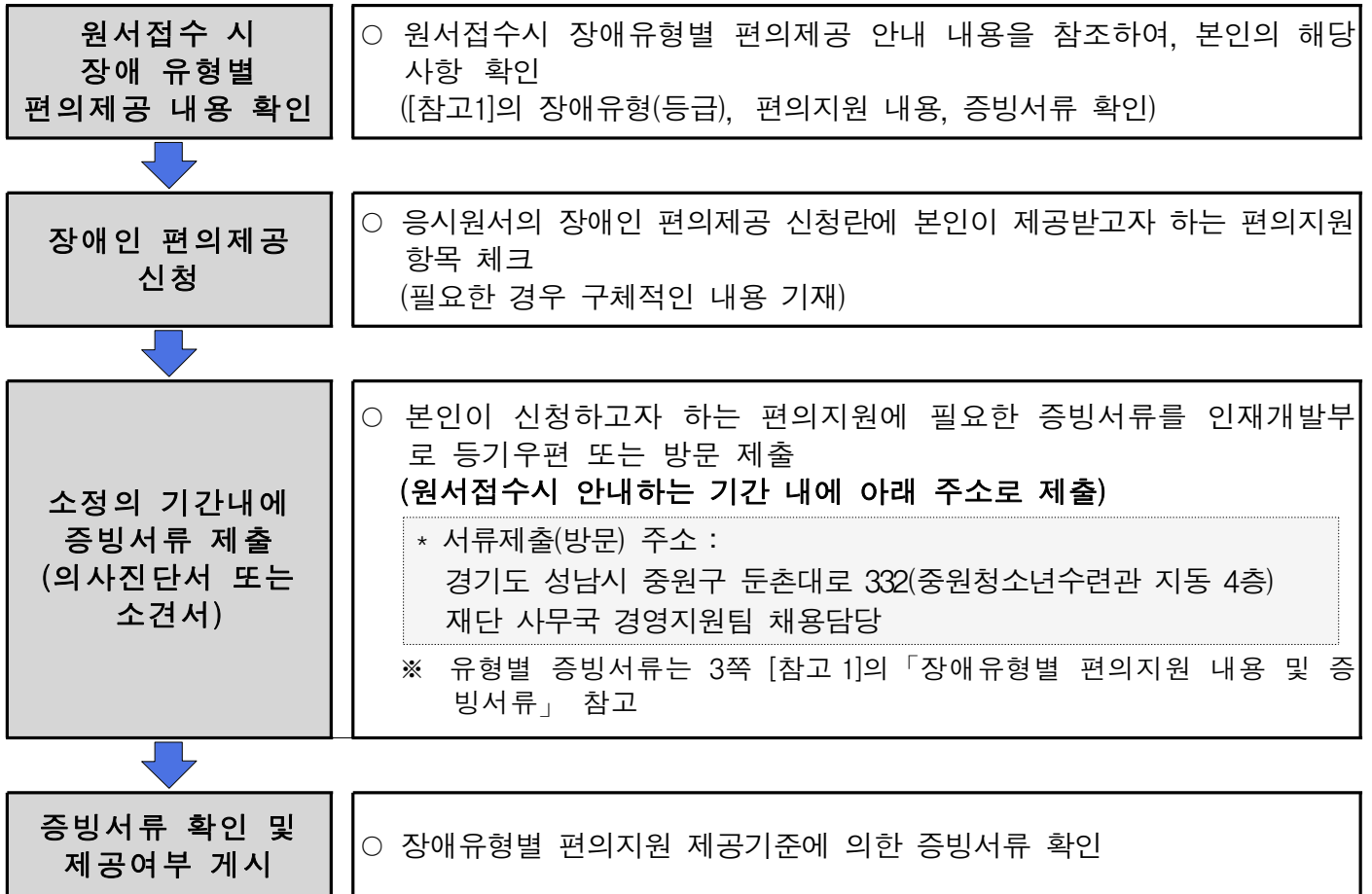
- 재단 사정에 따라 본 공고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집일정 등 공고사항은 재단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경력·재직증명·자격증 등 서류 원본 미제출로 인한 서류 전형 부적격 또는 합격 후 불이익은 응시자에 있습니다. <자격증사본 제출자는 필히 원본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또는 응시원서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빙서를 제출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재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합격 자진 포기 및 임용등록 포기 시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며,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 임용 후 1개월 내 퇴직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결과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입니다.
-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 모든 서류 및 기타 기준일은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채용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경영지원팀 채용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729-9011)

- 2018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직원채용 필기시험 -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 성남시청소년재단 직원채용 지원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2 편의지원 신청 절차



3 편의지원 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1. [참고1]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참고1]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2.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S/W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지원자는 입력란에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참고2]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4.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 경영지원팀(031-729-9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 유형(등급)		필기시험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 장애	중증 상지장애 (1급~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선택형 시험)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경증 상지장애 (4급~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하지장애	전용책상(휠체어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뇌병변 장애	중증 뇌병변 (1급~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선택형 시험)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경증 뇌병변 (4급~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시험시간 1.5배 연장	의사진단서
시각 장애	- 1급~2급 - 3급2호4급2호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시험시간 1.7배 연장 점자문제지	없음 (단, 3급2호,4급2호는 의사진단서)
		점자답안지, 확대문제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3급~6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 5급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 시간연장 가능	없음 (단, 6급은 의사진단서)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청각 장애	2급~6급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 200%(24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1

* 확대답안지(선택형시험)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구 분	기준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18년 10월 30일
진단서(소견서) 발급일	2016년 10월 30일 이후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시 각 장 애	3급2호 4급2호	상기인은 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6급	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 타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 애	경 증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